

2022년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2. 2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50건(안건번호 제2022-5917호 ~696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5917호는 □□□□□□□□□에서 제품 상세 이미지를 이용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해당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민원인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해당 안건과 같은 경우 관리자가 직접 민·형사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5918호~5922호는 ▼▼▼▼▼에 음악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온라인서비스가 신탁관리단체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제휴계약의 범위 안에서, 즉 관리자의 이용허락 하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5923호~5924호는 ▽▽▽▽▽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

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022-5923호는 시정권고를 가결하며, 제2022-5924호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925호는 ▲▲▲ 블로그에 영상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저작물이 홍보 목적의 무료 제공 저작물인 점, 권리자의 저작물을 직접링크 방식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고, 게시물의 위법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926~5956호는 ▲▲▲ 블로그, ◆◆◆◆◆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957~696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2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

보 총 1,10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4401호~5509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1,10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1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2-5917호~696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917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민원인 회사의 제품 사진 등을 이용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에서 제품 ‘●●●●●●●●●●’ 총 1건의 제품 상세설명을 이미지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게시되어 있음. 총 1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591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제품 상세설명을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의 사진 및 상품설명 편집물은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게시자의 제품판매행위가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재판매행위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적법한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쟁점사안에 대한 민원인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관리자(민원인)가 직접 민·형사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하여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591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부결의견에는 동의함. 다만, 우리가 이러한 안건을 부결하는 이유 중에는 시정권고의 내용이 게시물 전체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그래서 이 게시물 자체를 전부 삭제하거나 전송·중단할 경우에 게시자의 영업에 제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임. 그러나 해당 영업활동이 반드시 적법한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검토의견처럼 “적법한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영업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 정도가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 E 위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부분인데, 적법한 영업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영역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심의하면서,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는지 여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A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적법한 제품 판매행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판매행위가 적법한 재판매 행위라면 게시물의 삭제시 적법한 영업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판매행위 자체는 적법한 영업활동인 경우 관리자가 아닌 공공기관인 우리 보호원이 물건 판매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만으로 판매 자체를 막는 게시물 삭제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A 위원: 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제품의 유통에 관련된 사항인데, 굳이 사진 저작권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유통 부분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음..
- C 위원: 유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광고물을 제작하는 데 금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도 사실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같은 제품을 유통하면서 해당 사진을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있음. 유통이 적법하다고 해도, 광고물이 필요하다면 직접 제작할 수도 있을 것임.
- A 위원: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차적인 저작권의 문제로 치환해서 다루고 있다는 느낌임.
- C 위원: 다만 민원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광고물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지, 유통 자체를 막아달라는 것까지는 아님. 사진만 제거할 수 있다면 민원인은 따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우리 시정권고는 게시물의 일부인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이 아닌 게시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 D 위원: 이러한 광고 사진들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되는지?

- C 위원: 광고 사진도 저작물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음. 심의 대상 사진의 경우 제품을 그대로 찍은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진을 함께 편집하거나 내부 이미지를 작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물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B 위원: 여기 이용된 사람들 사진 같은 경우도 스톡 사이트 등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5917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917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게시자의 제품판매행위가 어떠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재판매행위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대심제 구조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쟁점사안에 대한 민원인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관리자(민원인)가 직접 민·형사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918호~5922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 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에서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에서 음악 ‘★★★★★★★
★★★’ 등 5건을 공중에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5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5918호~592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각 음악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해당 온라인서비스가 신탁관리단체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제휴계약의 범위 안에서, 즉 권리자의 이용허락 하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5918호~592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민원인은 왜 심의대상 게시물을 신고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신탁관리단체와 계약을 맺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만 알려져 있음. 따라서 민원인은 신탁관리단체와 '○○○○○'의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A 위원: ○○○○○가 신탁관리단체 두 군데와 협약을 맺은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음.
- E 위원: 그런데 이 저작권접권 관련하여 실연자 신탁단체와는 계약했다고 하지만, 음반제작자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당 플랫폼이 음원 이용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 ☆ 같은 경우 가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대부분 음반사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함.
- A 위원: ○○○○○ 음악 저작권 관련 공지에는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으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가 물론 음반의 마스터권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이지만 E 위원님 말씀처럼 신탁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신탁되지 않은 권리들은 각 음반 회사들이 직접 갖고 있는데, 그 음반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권리를 취득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부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 E 위원: ○○○○○의 구조적 문제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이나 개별 음반제작자가 103조를 근거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시정권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 ★ 두 단체와 제휴를 맺고 이용하고 있는 음원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이 있어 보임.
- C 위원: ○○○○○가 자체적으로 게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유튜브와 똑같은 방법임.
- A 위원: 심의안건 상정된 ‘□□□□’ 채널은 개인 이용자가 개설한 채널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강나래 전문위원: ○○○○○가 ◆◆◆처럼 CID를 활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음원 이용 사실을 확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의문이기는 했으나,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음. 다만 해당 부분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네이버TV의 음원 이용 관련 공지사항을 보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 부결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마스터권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휴 신탁단체가 이용료를 청구할 때 이용료 계산이 제대로 되는 구조인지, 혹 적절한 계

산이 되지 않는 구조라면 해당 신탁단체는 신탁관리업자로서 그러한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여러 의문이 들기는 함. 그러나 플랫폼이 공지를 통해 어느 정도 이용 허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의결과를 내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

- C 위원: 만일 문제가 있다면 관리자 또는 신탁관리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리가 시정권고할 수는 없어 보임. 다만 플랫폼 측에 완전한 권리처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 오진해 전문위원: 향후 신탁관리단체 등에게 해당 권리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5918호~5922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918호~5922호는 해당 온라인서비스가 신탁관리단체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제휴계약의 범위 안에서, 즉 관리자의 이용허락 하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923호~5924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
■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에서 영화 ‘▼▼▼▼’ 등 총 2건을 직접 링크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게시되어 있음. 총 2개 게시물임.

(안건번호 제2022-592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직접 링크 형태로 게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 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제공 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건번호 제2022-5923호는 가결의견으로 검토하였으며 안건번호 제2022-5924호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2-5923호~592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E 위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 침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5923호~5924호 중 안전번호 제2022-592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하며 이미 삭제된 안전번호 제2022-5924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5925호는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임. 영상 저작물을 ●●● 블로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블로그에서 방송 ‘☆☆☆☆☆☆☆☆☆☆’ 1건을 공중에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2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2-592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를 통해 복제·전송중인 영상 1건과 함께 공식 ◆◆◆ 영상 주소를 직접 링크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 심의대상 게시물은 관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제공 영상이 홍보 목적의 무료 영상물인 점, 관리자의 저작물을 직접링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광고를 부착하여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은 점, 게시자의 다른 게시물들은 원 출처의 직접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로 구성된 점 등을 볼 때 저작권법 준수 안내에 의하여 스스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게시물의 위법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2-592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영상의 일부는 ◆◆◆에서 볼 수 있고 일부는 못 본다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복제·전송중인 영상은 현재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처음에는 일본 내에서만 볼 수 있게 설정되어 있었다가, 2020년 정도에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지역 제한이 해제된 것으로 보임.
- A 위원: 해당 영상을 ◆◆◆의 링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면 이용자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처음부터 링크만 제공을 했을 것 같다는 것인지?
- C 위원: 우리말 자막도 없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는 의문임.

- A 위원: 일본 영상물들은 지역 제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일본의 경우 권리자들이 권리 처리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으며, 그러한 성향이 지역 제한으로 반영되는 것 같음.
- C 위원: 그렇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역 제한을 해제한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관련한 현황을 간단히 조사하였음. 해당 저작물은 2020년에 ▽▽▽▽ 한국 서비스에서 챗터1의 제공을 시작하였음. 그래서 같은 시기에 해당 챗터의 홍보 영상을 지역제한 없이 공개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였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2-5925호에 대해 원안대로 경고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경고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925호는 제공 영상이 홍보 목적의 무료 영상물인 점, 권리자의 저작물을 직접링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광고를 부착하여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은 점, 게시자의 다른 게시물들은 원 출처의 직접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로 구성된 점 등을 볼 때 저작권법 준수 안내에 의하여 스스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위법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2-5926호~5937호는 민원인들(실명 1명)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이며 안전번호 제2022-5938호~5956호는 민원인(실명 2인, 익명 1인)이 신고한 사안임. ○○○○○, 블로그 및 웹하드에서 영상, 만화 불법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웹하드에서 만화 ‘▲▲▲▲▲’ 등 31건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80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2-593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만화저작물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2-5926호~595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E 위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926호~5956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2-5957호~696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영화)매트릭스: 리저렉션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6328호는 웹하드에서 ‘(영화)매트릭스: 리저렉션 (2021)’을 164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12. 22. 개봉한 해외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서비스 중임.
 (영화 ‘(영화)간호중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6457호는 웹하드에서 ‘(영화)간호중 (2020)’을 10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2021. 12. 2. 공개한 한국 영화로 시리즈온에서 서비스 중임.
 (프로그램 ‘오토캐드 AutoCAD 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6761호는 웹하드에서 ‘오토캐드 AutoCAD 2022’을 210포인트에 제공 중임. 2021. 3. 24. 발매한 PC용 프로그램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5953호~696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2-5957호~696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957호~696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2-5917호, 5918호~5922호는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5924호, 5925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건번호 제2022-5924호, 5926호~5956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2-5957호~696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1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4401호~5509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3.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